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672호)

2024.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 및 재정운영위원회 국회추천 위원 추가 ..	3
2. 위원회 회의록 공개	9

I. 개요

1.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672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한정애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7. 12.
- (3) 회 부 일 : 2024. 7. 1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보험재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재정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음.

이들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의 기준 및 비용, 보험료율 등 건강보험정책과 보험재정에 대한 광범위한 심의·의결을 하고 있으나 국민적 참여와 통제가 쉽지 않은 상황임.

따라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의 간사와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2인을 추가하고, 회의록은 공개하도록 하여 위원회에 대한 국민 통제 및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34조).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 및 재정운영위원회 국회추천 위원 추가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두고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보험재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두고 있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의 간사와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2인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34조).

현행	개정안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① (생략)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u>25명</u>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 <u>27명</u> ----- -----.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제4호의 위원 중에서 <u>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u>	③ ----- ----- ----- <u>호선한다.</u>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u>8명</u>	4. ----- <u>10명</u>

<신 설>

가. ~ 다. (생 략)

⑤ 심의위원회 위원(제4항제4호가목에 따른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4조(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재정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0명
2.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0명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10명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제1항제1호의 위원은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각 5명
2. (생 략)
3. 제1항제3호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 및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생 략)

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의 간사와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2명

나. ~ 라. (현행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같음)

⑤ -----제4항제4호나목

-----.

-----.

제34조(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

1. -----12명
2. -----12명
3. -----12명

② -----

-----.

1. -----6명
2. (현행과 같음)
3. -----

사람(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의 간사와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2명을 포함한다)

③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4조 및 제33조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¹⁾, 요양급여비용 계약체결 및 결손처분 등 보험재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으로 재정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²⁾.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³⁾,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법 제4조제2항),

- 재정운영위원회는 직장가입자대표, 지역가입자대표, 공익대표 각 10명씩 3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⁴⁾, 위원장은 공익대표 위원 중에서 호선함(법 제34조).

1)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①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의결은 제외한다)

2.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

3. 제45조제3항 및 제46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4. 제7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5. 제73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5의2. 보험료 부과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의결은 제외한다)

가. 건강보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소득 파악 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나. 가입자의 소득 파악 및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제도 개선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그 밖에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재정운영위원회) ① 제45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및 제84조에 따른 결손처분 등 보험재정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재정운영위원회를 둔다.

3)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2명,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1명,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8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추천하는 각 1명,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명

4) 직장가입자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 추천 각 5명)·지역가입자대표(농어업인 단체·도시자영업자단체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공익대표(관계 공무원 및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

구분	위원 총수	위원장	위원 구성
(보건 복지부) 건강보험 정책심의 위원회	25명	보건복지부 차관	○ 위원장 (1명) ○ 가입자 대표 (8명) -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2명 -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1명 ○ 공급자 대표 (8명) -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8명 ○ 공익 대표 (8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명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추천하는 각 1명 -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명
(건보공단) 재정운영 위원회	30명	공익대표 위원 중 호선	○ 직장가입자 대표 (10명) -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각 5명 ○ 지역가입자 대표 (10명) - 농어업인 단체·도시자영업자단체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공익 대표 (10명) - 관계 공무원 및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의 간사와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2명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및 재정운영위원회(공익대표) 위원으로 각각 추가함으로써, 건강보험 정책 및 재정 운용에 대한 국민적 통제 및 의사결정의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써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여짐.

□ 다만, 개정안은 각 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늘리면서 (심의위원회 25명 → 27명, 재정운영위 30명 → 36명) 국회 추천 2인을 각각 포함하도록 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비율이 가입자 대표, 공급자 대표, 공익 대표가 각각 8 : 8 : 10으로 변경되는바,

기준에 의사결정 주체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각 위원회의 비율을 8 : 8 : 8 동수로 구성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각 대표별 추천 인원을 동일하게 2인씩 늘리거나, 현행 위원수를 유지하되 공익대표의 구성에 국회 추천인원 2명을 규정하는 방법도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따른 위원수 변경>

구 분		현 행	개 정 안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	가입자 대표	8명	8명
	공급자 대표	8명	8명
	공익 대표	<u>8명</u>	<u>10명</u> (국회추천 2명)
재정운영 위원회	지역가입자 대표	<u>10명</u>	<u>12명</u>
	직장가입자 대표	<u>10명</u>	<u>12명</u>
	공익 대표	<u>10명</u>	<u>12명</u> (국회추천 2명)

다. 관계기관 의견

(1) 보건복지부

-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수가 - 보험료 간 연관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 부담 주체인 ‘가입자’, 수가 적용 대상인 ‘공급자’, 균형자 역할인 ‘공익 대표(정부·보험자·전문가)’ 간 동수로 운영되고 있고, 재정운영위원회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공익 대표가 각각 동수로 구성되어 민주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는바, 각 주체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현행 구조의 취지를 고려할 때 위원 2명을 추가하는 것에 있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2)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가가 추천하는 사람을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추가하고,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통제 및 의사결정의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함.
- 다만, 재정운영위원회 의결사항은 결손처분 및 요양급여비용 계약체결에 한정되어 보험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며, 개정안에 따른 위원 36명은 타 위원회와 비교하면 지나치게 많아 위원회 운영의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음.

2. 위원회 회의록 공개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회의 개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되, 업무수행의 지장을 초래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1년이 지난 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6항 및 제34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① ~ ⑤ (생략) <u><신설></u>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① ~ ⑤ (생략) <u>⑥ 심의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토의 내용 및 의결 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개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개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개할 경우 건강보험정책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안건 또는 위원장이 공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 개최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해당 안건의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u>
⑥·⑦ (생략)	<u>⑦·⑧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u>
제34조(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③ (생략)	제34조(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③ (생략)

<신 설> ④ (생 략)	④ 재정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토의 내용 및 의결 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개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개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개할 경우 보험재정에 관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안건의 경우에는 재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 개최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해당 안건의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현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⁵⁾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되고 있으며, 주요한 내용을 요약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심의위원회 및 재정운영위 회의록 현황 >

심의위원회 회의록	재정운영위 회의록
일시, 장소, 출석위원, 안건 주요내용, 주요 제기내용, 심의결과	일시, 장소, 출석위원, 안건내용, 의견 요지, 의결결과

자료: 보건복지부

□ 개정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에 대하여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토의 내용 및 의결 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원칙적으로 회의 개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되, 업무 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안건 또는 위원장이 공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의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해당 안건의 회의록을 1년간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험정책 및 재정운용 결정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판단됨.

- 이와 관련하여 공개방법, 공개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하위 법령에서 구체화하도록 위임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다. 관계기관 의견

(1) 보건복지부

- 위원회 내에서 위원 간 자유로운 의사 교환과 원활한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예외적 비공개사유 명시, 회의록 공개 시기 등에 대한 수정 검토가 필요함.

(2) 국민건강보험공단

- 개정안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회의록에는 심의과정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까지 포함될 수밖에 없는데, 이를 공개하게 되면 자유롭고 활발한 심의가 어려울 수 있음.
 - 요양급여비용 계약과 관련, 계약상대방인 요양기관측의 자료가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회의록이 일방적으로 공개될 경우 향후 공단 협상력 저하로 원활한 계약체결이 어려울 수 있고, 결론처분 관련 정보의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음.

문 의 처
02)6788-5503